

에너지 안보확립을 위한 에너지규제거버넌스 개편 방안: 토론

한양대학교 김 영산

우리나라의 에너지 규제 현황:

산업부가 대부분의 규제를 직접 시행. 전기위원회, 전력정책심의위원회 등 위원회들이 명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 이런 위원회들은 독자적으로 규제 정책을 개발, 시행할 능력과 힘이 없음. 대부분의 위원들은 비상임이며, 산업부 장관이 임명. 정부가 제출한 안건을 review하고 자문하는 기능에 불과.

이런 구조에서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는:

장관이나 정부가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실무담당 공무원(국,과장급)들이 다양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수단을 활용하여 위원회에서 원하는 결정을 이끌어냄. 또한 핵심적인 에너지산업을 국영기업(가스공사, 한국전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업부의 통제력을 극대화시킴. 즉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규제는 'command and control' 위주.

최근 '독립적' 에너지규제기관 설립에 대한 주장이 많이 제기됨.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성인가? 전력산업에서 독립적 계통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라고 할 때의 독립은 계통에 연결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며 '중립성'의 의미를 가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요구되는 독립성은 이보다는 정부 또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임.

그러나 국가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에너지규제는 국민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을 져야하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

그러므로 에너지규제기관에게 요구되는 독립성은 '단기적 정치적 이해'(short-term political interest)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서 규제기관을 산업부에서 독립시켜 독자적 행정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음. 그러나 미국의 FERC나 영국의 Ofgem은 각각 DOE 와 BEIS 소속임. 중요한 것은 행정조직상 소속보다는 규제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유지하는 것. FERC는 5명의 commissioner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비준을 받음.

질문 (영국 측 발표자)

영국의 Ofgem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GEMA를 두고 있는데, GEMA와 Ofgem의 정확한 관계는 무엇인가? GEMA 위원장과 위원들은 모두 BEIS 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 Ofgem이 BEIS나 다른 정부 부처로부터의 독립성(independence)을 확보할 수 있는가?